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 7 선고 2019가합593618 판결 [사해행위취소]

---

전 문

원 고 파산자 주식회사 A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자유라이프

담당변호사 김선인, 김도연

피 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안

담당변호사 이항영

변 론 종 결 2020. 11. 26.

판 결 선 고 2021. 1. 7.

주 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표의 순번 16 내지 22 기재 각 돈에 관하여 체결된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1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N

## 청 구 취 지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표의 순번 1 내지 23 기재 각 돈에 관하여 체결된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11,95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이 유

###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A은 2013. 4. 2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하합53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나. 원고는 C 및 D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067805호로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5. 10. 13. ‘C 및 D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80,127,345원 및 그 중 134,815,513원에 대하여 2014. 12.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C는 별지 표 기재와 같이 자신의 명의로 개설된 계좌에서 배우자인 피고 명의의 계좌로 돈을 이체하거나 현금 및 수표를 인출하여 피고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합계 311,950,000원을 송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C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제1의 다.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고에게 합계 311,950,000원을 증여하였는바, 위 각 증여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위

311,950,000원을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 나. 피고의 주장

C는 별지 표 기재와 같은 송금 당시 무자력 상태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C가 피고에게 송금한 돈은 생활비 등 명목으로 처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한 것이거나(별지 표의 순번 10 내지 15) E 또는 C와 피고의 사위(F)로부터 차용한 돈을 피고의 계좌로 송금한 것이거나(별지 표의 순번 1 내지 5, 16 내지 20, 23) 피고 소유의 부동산 임차인들로부터 받은 임차보증금을 피고의 계좌로 송금한 것이므로(별지 표의 순번 6 내지 9, 21, 22), 위 각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3. 판단

#### 가. 사해행위취소권의 발생

##### 1) 피보전채권 존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C에 대하여 680,127,345원 및 지연손해금 상당의 판결금 채권이 있으므로, 이는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 2)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 가) 관련 법리

(1)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채무자의 총 재산의 감소가 초래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되어야 하는 것, 즉 채무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아지거나 채무초과상태가 심화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47852 판결 등 참조), 이에 관하여는 당해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임을 주장하는 채권자가 그 증명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9129 판결 참조).

한편 사해행위 소송에서 재산 가액의 평가는 사해행위로 문제된 법률행위 당시의 시가에 의하여야 할 것인데, 당해 재산의 시가는 반드시 감정가, 낙찰가, 공시지가, 과세표준액 중 특정한 하나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는 일반적 법리가 있는 것은 아니고, 당해 소송에서 양 당사자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제반사정에 비추어 여러 가격 자료 중 당시의 시가를 가장 잘 반영하는 가격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1다8615 판결 참조).

(2)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된다. 그러나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금원지급행위를 증여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수익자가 다투고 있는 경우에는 그 금원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할 것이고, 그에 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등 참조).

채무자가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금전에 관하여 증여계약이 성립하였다고 하려면, 우선 객관적으로 채무자와 다른 사람 사이에서 그와 같이 송금한 금전을 다른 사람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되도록 무상 공여한다는 데에 의사합치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하는데,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 그 송금은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것으로서, 그 송금행위의 구체적인 법적 원인을 가리지 않고서 그 송금사실만을 가지고 송금인의 총재산의 실질적 감소를 초래하는 사해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4다222725 판결 등 참조).

나) 별지 표의 순번 1 내지 10 기재 송금내역 부분

(1) C가 피고에게 자신의 계좌에서 피고 명의의 계좌로 돈을 이체하거나 현금 및 수표를 인출하여 피고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2015. 3. 9.부터 2015. 7. 16.까지 합계 182,9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2)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15, 16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C는 용인시 기흥구 G 토지 및 지상 건물에 관하여 2014. 10. 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후 위 각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가 2015. 10. 30. H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점, ② 2015. 10. 30. 무렵 위 각 부동산의 공시지가 합계는 630,000,000원에 불과하였으나, 위 H이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납부한 취득세 납부확인서(을 제3호증)에 의하면 과세표준액이 1,320,000,000원에 이르는 점(일반적으로 부동산의 공시지가는 시가보다 낮게 평가되는 등 시가를 정확하게 반영되는 것은

아니고, 취득세의 과세표준액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므로, 과세표준액이 공시지가보다 시가를 잘 반영한다고 보인다), ③ C가 위 각 부동산을 소유할 당시 위 각 부동산에는 채권최고액 합계 26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전세금 240,000,000원의 전세권설정등기만이 마쳐져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별지 표의 순번 1 내지 10 기재 송금행위 무렵 C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별지 표의 순번 1 내지 10 기재 송금행위는 원고 등 C의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되는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 별지 표의 순번 11 내지 15, 23 송금내역 부분

(1) C가 피고에게 자신의 계좌에서 피고 명의의 계좌로 돈을 이체하거나 현금 및 수표를 인출하여 피고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2016. 5. 20.부터 2017. 5. 29.까지 합계 15,050,000원을 송금하고, 2018. 5. 21. 1,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2) 그러나 부부 사이에서 일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타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되는 경우에는 증여 외에도 단순한 공동생활의 편의, 일방 배우자 자금의 위탁 관리, 가족을 위한 생활비 지급 등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으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 및 입금사실이 밝혀졌다는 사정만으로는 경험칙에 비추어 해당 예금이 타방 배우자에게 증여되었다는 사실이 추정된다고 할 수 없는바(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두41937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C와 피고는 부부 사이이고, 부부간에 부양의무(민법 제826조 제1항)를 부담하는 점, ② 원고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별지 표의 순번 11 내지 15 각 송금행위는 2016. 5. 20.과 2017. 2. 2.부터 2017. 5. 29.까지 4개월의 단기간 동안 5차례에 걸쳐서 이루어졌는데 그 송금액이 6,000,000원, 1,000,000원, 3,850,000원, 3,700,000원 및 500,000원으로 합계액이 15,050,000원이고, 위 표의 순번 23 송금행위는 그 금액이 1,000,000원에 불과한 점, ③ 원고는 위 각 송금내역만을 근거로 C가 피고에게 증여한 것이라고 주장할 뿐 위와 같이 송금된 돈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등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도 하고 있지 않은 점(피고는 위와 같은 송금된 돈이 C와 피고의 생활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 위 돈이 C와 피고의 공동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비용으로 지출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C가 피고에게 위 합계 16,050,000원을 증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돈에 관하여 C와 피고 사이에 증여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라) 별지 표의 순번 16 내지 22 송금내역 부분

(1) C가 피고에게 자신의 계좌에서 피고 명의의 계좌로 돈을 이체하거나 현금 및 수표를 인출하여 피고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2017. 7. 27.부터 2018. 4. 25.까지 합계 113,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나아가 ① 위 각 송금행위는 약 9개월 동안 5차례에 걸쳐 이루어졌는데, 송금액이 각 32,000,000원, 31,000,000원, 20,000,000원, 25,000,000원, 5,000,000원으로 다액인 점, ② 피고는 위 32,000,000원, 31,000,000원 및 20,000,000원은 피고의 사위로부터 차용한 돈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위 25,000,000원 및 5,000,000원에 대하여도 피고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받은 임대차보증금이라고 주장할 뿐 그에 관한 아무런 증거도 제출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합계 113,000,000원은 C가 피고에게 증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위 각 송금행위 당시 C는 적극재산이 없었던 반면 위 1)항에서 본 판결금 채권 상당의 소극재산이 있었으므로 채무초과상태에 있었고, 이와 같이 채무초과상태에 있던 C가 피고에게 위 각 돈을 증여한 행위는 원고들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되는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나아가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던 C가 위 각 돈을 피고에게 증여함으로써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의 부족이 심화되어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을 해하게 되리라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C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며, 채무자인 C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는 이상 수익자인 피고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의 방법

C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별지 표의 순번 16 내지 22 기재 각 돈에 관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모두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합계 11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자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4.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오권철, 판사 정윤택, 판사 전희숙

(별지)

표

| 순번 | 송금은행 | 지점명  | 송금계좌번호             | 송금일          | 송금액        | 비고                 |
|----|------|------|--------------------|--------------|------------|--------------------|
| 1  | I은행  | 죽전보통 | (계좌번호 1 생략)        | 2015. 3. 9.  | 4,000,000  | 갑 3-1, 2           |
| 2  |      |      |                    | 2015. 3. 23. | 2,300,000  | 갑 3-4              |
| 3  |      |      |                    |              | 2,000,000  | 갑 3-4              |
| 4  | J은행  | 죽전보  |                    | 2015. 3. 11. | 5,000,000  | 갑 3-4              |
| 5  |      |      |                    |              | 20,000,000 | 갑 3-3              |
| 6  | K은행  | 죽전중앙 | (계좌번호 2 생략)        | 2015. 4. 27. | 69,000,000 | 갑 4-1,2            |
| 7  |      |      |                    | 2015. 6. 15. | 5,000,000  | 갑 5-1 ~ 5-5        |
| 8  |      |      |                    |              | 61,700,000 |                    |
| 9  |      |      |                    |              | 12,800,000 |                    |
| 10 | K은행  | 죽전중앙 | 현금                 | 2015. 7. 16. | 1,100,000  | 갑6                 |
| 11 | I은행  | 죽전보통 | (계좌번호 1 생략)        | 2016. 5. 20. | 6,000,000  | 갑 7-1,2            |
| 12 | K은행  | 죽전중앙 | (계좌번호 3 생략),<br>현금 | 2017. 2. 2.  | 1,000,000  | 갑 8                |
| 13 | K은행  | 죽전중앙 | 현금                 | 2017. 3. 14. | 3,850,000  | 갑 9                |
| 14 | K은행  | 죽전중앙 | (계좌번호 2 생략)        | 2017. 5. 29. | 3,700,000  | 갑 10-1,2           |
| 15 | K은행  | 죽전중앙 | 현금                 | 2017. 5. 29. | 500,000    | 갑 10-2             |
| 16 | K은행  | 죽전중앙 | (계좌번호 2 생략)        | 2017. 7. 27. | 32,000,000 | 갑 11               |
| 17 |      |      |                    | 2018. 1. 29. | 25,000,000 | 갑 12-1             |
| 18 |      |      |                    |              | 5,000,000  | 갑 12-1,2           |
| 19 |      |      |                    |              | 1,000,000  | 갑 12-1,3           |
| 20 |      |      |                    | 2018. 3. 13. | 20,000,000 | 갑 13-1             |
| 21 |      |      |                    | 2018. 3. 19. | 25,000,000 | 갑 13-1,2,<br>갑 5-5 |

|    |     |      |    |              |             |       |
|----|-----|------|----|--------------|-------------|-------|
| 22 |     |      |    | 2018. 4. 25. | 5,000,000   | 갑 5-5 |
| 23 | K은행 | 축전중앙 | 현금 | 2018. 5. 21. | 1,000,000   | 갑 14  |
| 합계 |     |      |    |              | 311,950,000 |       |

끝.